

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

(이명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7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.

발의자 : 이명녀, 안영호, 홍영진
박경흠, 문기호, 문희성
강혜순

1. 제정이유

이 조례는 경로당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는 어르신을 위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지원 대상 및 범위, 지원 기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안 제6조)

마. 지도·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바. 지원금의 지급 중지 및 반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관계법령

가.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, 제36조, 제37조

나.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6조

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: 2025. 9. 24. ~ 10. 1.(7일간) / 의견없음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미등록 경로당”이란 「노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았으나,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중구”라 한다) 내 노인들이 친목 도모, 여가 활동 등을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소로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매년 관내 미등록 경로당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미등록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 대상 및 범위)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중구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.

② 제2조의 “미등록 경로당” 지정을 위한 요건은 이용 노인 수, 장소의 공공성, 안정성, 지속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 환경 개선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타 민간 후원 등을 통해 연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등록 경로당과의 형평성, 이용 인원, 시설 규모,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 지

원 규모나 항목은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.

1.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및 계절별 냉·난방비
2. 미등록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비
3. 미등록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
4. 그 밖에 구청장이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대상 포함 여부 및 지원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 기간) ① 제5조에 따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미등록 경로당의 등록경로당 요건 충족이행을 위한 준비계획 또는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지도·관리)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·지원 사항을 지도·관리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금의 반환 등)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,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본 조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
2.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
3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

제9조(시행에 필요한 사항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

6 (제277회-복지건설위제1차부록)

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노인복지법」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
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3. 노인교실 :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·노인건강유지·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4. 삭제 <2011. 6. 7.>

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

제26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)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
②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
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 7] <개정 2019. 9. 27.>

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(제26조제1항 관련)

1. 시설의 규모

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가. 노인복지관 :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

나. 경로당 : 이용정원 20명 이상(섬 또는 읍·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)

다. 노인교실 : 이용정원 50명 이상

2. 시설기준

구분 시설별	사무실	식당 및 조리실	상담 실 또는 면회실	집회 실 또는 강당	프로그 램실	화장실	물리 치료실	비상 해 대 시설	거실 또는 휴게실	전기 시설	강의 실	휴게실	객실	공동 목욕 장	기타 대 시설
노인 복지관	1	1	1	1	1	1	1	1							
경로당						1			1	1					
노인 교실	1					1					1	1			

3. 설비기준

구분 시설의 종류	노인복지관	경로당	노인교실
설비기준	<p>가. 식당 및 조리실: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,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.</p> <p>나. 프로그램실: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.</p> <p>다. 물리치료실: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</p>	<p>가. 거실 또는 휴게실 : 20제곱미터 이상이 여야 한다.</p>	<p>가. 강의실 :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</p>

4. 직원의 자격기준

직종별	자격기준
노인복지관 시설장	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

5. 직원의 배치기준

직종별	시설의 장	사회복지사	강사(외부)	물리	사무원	조리원	관리인
-----	-------	-------	--------	----	-----	-----	-----

10 (제277회-복지건설위제1차부록)

시설별			강사 포함)	치료사			
노인복지관	1명	2명 이상		1명	1명	1명	1명
노인교실	1명		1명				

비 고

노인복지관에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약의사(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)를 둘 수 있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」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·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2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
3.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,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

4.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작성자

- 소 속: 노인장애인과
- 직 급: 지방사회복지주사
- 이 름: 이미영
- 연락처: 052-290-3681